

학점인정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.02.22. 개정 2022.04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학점인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학점인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점인정 기준 수립
2. 학점인정 범위
3.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4.04.>
-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4.04.>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

야 한다.

부 칙(2021.0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